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 
2023. 9. 19(화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○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(안) : 총 조성규모 49,870,93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변경전	변경후	증 감 액	비 고
총 조성 규모 ㉔ = ㉑ + ㉒	48,258,901	49,870,938	1,612,037	
2022년도 말 조성	39,906,801	39,906,801	-	
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	수입	9,840,735	1,912,037	
	지출	10,530,302	300,000	
2023년도 말 조성액 ㉑	37,305,197	38,917,234	1,612,037	
용자금미회수 채권 ㉒	10,953,704	10,953,704	-	

○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(안) :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(20%이상)

(단위 : 천원)

변경 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㉑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3년도말 조성액 ㉒ = ㉑ + ㉓ - ㉔	증 감 액 ㉕ = ㉒ - ㉑	비고
		수입㉓	지출㉔			
통합재정 안정 기 정 화 기 금	17,779,596	변경전	497,829	0	497,829	기 회 산 과
		변경후	2,409,866	0	2,409,866	
도로굴착 복구기 금	2,174,734	변경전	1,821,431	1,664,207	157,224	도 로 과
		변경후	1,821,431	1,964,207	△142,776	

## 4. 교통건설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### ○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기 정 액	증 감	항 목	변 경 액	기 정 액	증 감
합 계	3,996,165	-	합 계	3,996,165	3,996,165	
예 치 금 회 수	2,174,734	-	비 용 자 성 사 업 비	1,964,207	1,664,207	300,000
이자수입	29,431	-				
기타수입	1,792,200	-	예 치 금	2,031,958	2,331,958	△300,000

## 5. 검토의견

-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, 건물신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굴착복구공사(원인자:한국전력공사)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한 도로복구를 추진하고자 기정액에서 3억원이 증감된 변경안으로 계획하고자 함
-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